

교원연봉제 운영규정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사유
<p>제15조(평가항목) ① 교원의 업적평가 항목은 <u>연구, 교육, 봉사</u> 부분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 연구부문은 연구비 수혜실적, 논문발표실적, 연구결과 활용 실적, 수상실적 등을 포함한다.</p>	<p>제15조(평가항목) ① 교원의 업적평가 항목은 <u>교육, 연구(학술연구/산업연구)</u>, 봉사부분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 연구부문은 연구비 수혜실적, 논문발표실적, 연구결과 활용 실적, <u>산학협력실적</u>, 수상실적 등을 포함한다.</p>	<p>산업체경력 및 산학협력 실적이 우수한 인력의 평가기준 마련</p>
<p>제16조(평가방법 등)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각 학과의 특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각 학과별 자체적으로 <u>설정</u>, <u>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</u></p>	<p>제16조(평가방법 등)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각 학과의 특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각 학과별 자체적으로 <u>설정 후 시행한다.</u></p>	<p>절차를 단순화하여 학과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.</p>
	<p>부 칙</p> <p>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0월 0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</p> <p>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, 제16조의 개정 내용은 2017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.</p>	